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운영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권한

3.1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에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한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의 주주제안권에 의하여 후보가 적법하게 추천된 경우, 해당 후보를 포함시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3.2 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추천하고자 하는 사외이사 후보자의 수락 의사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여 후보자로 결정한다.

3.3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의 독립성 확보와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회사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고, 상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추천하기로 한다.

4. 구성

4.1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4.2 위원회는 3인의 사외이사와 1인의 사내이사로 구성한다.

4.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장을 선임한다.

4.4 위원장이 사임 등의 사유로 유고 시에는 이사 선임일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선임 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5. 소집권자

5.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4조 제4항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2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6. 소집절차

6.1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문자메시지, 이메일 또는 유선의 방법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6.2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상기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7. 부의사항

7.1 사외이사 후보자의 결정

7.2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주주총회 추천

7.3 기타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결의방법

8.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 본인이 사외이사 후보자일 경우 후보자 본인에 대한 투표권은 상실한다

8.2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9. 관계인의 의견청취

9.1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의사록)

10.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10.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위원과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1조(보고)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3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